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5. 1. 20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 출 일 자 : 1994년 12월 14일

○ 회 부 일 자 : 1994년 12월 14일

다. 상 정 일 자 :

○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4.12.19)상정

○ 제1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5. 1.20)상정 의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보건환경연구원장 신 태 당)

가. 제안이유

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에 의해 종전 37개 항목에서 43개 항목
으로 검사항목이 증가되었으며 조문중 현실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.

나. 주 요 골 자

○ 검사항목추가 및 수수료 조정

· 검사항목 추가 (6종) - 수수료 각각 4,000원

- 알루미늄, 디클로로메탄, 벤젠, 톨루엔, 에틸벤젠, 크실렌.

○ 시험 처리기간 변경

- 공해관계 시험 : 15일 → 20일 (5일 증가)

○ 현실 불부합 조문 개정

- 제3조(업무) 제1항 제3호중 "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"을 "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"로
 - 제9조(수수료 감면)조문 중 "국가기관이"를 "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"로
 - 동조 제7호 다음에 제8호 신설
8.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목욕수 원수 및 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,

본 조례안은

- 보건사회부령 제932호 ('94. 7.1)에 의거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종전 37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 추가된 검사항목 및 수수료를 조정하고
- 시험처리기간중 공해관계시험을 15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것 등은 관계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
- 제3조 제1항제3호 중 "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"을 "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"로 개정하려는것 등은 현실적으로 불부합한 조문을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: 없 음

5. 토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원안가결 (참석위원 7인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※ 첨부 서류 : 조례안 1부